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7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곽동환 의원, 신동윤 의원,
전홍배 의원

1. 제안이유

달성군의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하여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제14조)

다. 특별위원장의 사임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된 경우

제14조제1항 본문 중 “상임위원”을 “의원”으로 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부의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해당 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 -----.
제2조(위원회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3조(위원회의 책무)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책무) 위원회----- ----- ----- -----.
제3장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 제>
제7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경제건설위원회 6명 이내

제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

관) <삭 제>

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접수된 의안 또는 청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필요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상임위원) ① 의회 의원은 1

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5조에 따라 호선된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 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재임(在任)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前日)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

<삭 제>

<삭 제>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상임위원의 선임) 상임위원은 의장이 의회 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삭 제>

제12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삭 제>

② 상임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 개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되,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

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職)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 · 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 · 부의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해당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⑥ 상임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상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1. 접수된 의안과 청원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

2.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특별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

1.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위원 선임 등)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을 추천할 경우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 및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 ④ (생략)

⑤ 특별위원장의 사임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제14조(특별위원 선임 등) ① ----

----- 의원 -----

----- <단서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
· 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
· 부의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해당 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법률)」(2026.3.5. 일부개정, 2026.7.1.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조례)」(2025.7.18. 제정, 2025.7.18. 시행)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